

초과부과금의 산정기준(제45조제5항 관련)

1.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

(단위: 원)

수질오염물질		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	
유기물질	배출농도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으로 측정한 경우	250	
	배출농도를 총유기탄소량으로 측정한 경우	450	
부유물질		250	
총 질소		500	
총 인		500	
크롬 및 그 화합물		75,000	
망간 및 그 화합물		30,000	
아연 및 그 화합물		30,000	
페놀류		150,000	
특정유해물질	시안화합물	150,000	
	구리 및 그 화합물	50,000	
	카드뮴 및 그 화합물	500,000	
	수은 및 그 화합물	1,250,000	
	유기인화합물	150,000	
	비소 및 그 화합물	100,000	
	납 및 그 화합물	150,000	
	6가크롬화합물	300,000	
	폴리염화비페닐	1,250,000	
	트리클로로에틸렌	300,000	
	테트라클로로에틸렌	300,000	

※ 비고: 유기물질 초과부과금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총유기탄소량별로 산정한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2020년 1월 1일 전에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유기물질 초과부과금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화학적 산소요구량별로 산정한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.

2.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

수질오염물질	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									지역별 부과계수		
	20% 미만	20% 이상 40% 미만	40% 이상 80% 미만	80% 이상 100% 미만	100% 이상 200% 미만	200% 이상 300% 미만	300% 이상 400% 미만	400% 이상		청정지역 및 가 지역	나 지역	특례 지역
유기물질	3.0	4.0	4.5	5.0	5.5	6.0	6.5	7.0		2	1.5	1
부유물질	3.0	4.0	4.5	5.0	5.5	6.0	6.5	7.0		2	1.5	1
총 질소	3.0	4.0	4.5	5.0	5.5	6.0	6.5	7.0		2	1.5	1
총 인	3.0	4.0	4.5	5.0	5.5	6.0	6.5	7.0		2	1.5	1
크롬 및 그 화합물	3.0	4.0	4.5	5.0	5.5	6.0	6.5	7.0		2	1.5	1
망간 및 그 화합물	3.0	4.0	4.5	5.0	5.5	6.0	6.5	7.0		2	1.5	1
아연 및 그 화합물	3.0	4.0	4.5	5.0	5.5	6.0	6.5	7.0		2	1.5	1

페놀류		3.0	4.0	4.5	5.0	5.5	6.0	6.5	7.0	2	1.5	1
특정유해물질	시아나화합물	3.0	4.0	4.5	5.0	5.5	6.0	6.5	7.0	2	1.5	1
	구리 및 그 화합물	3.0	4.0	4.5	5.0	5.5	6.0	6.5	7.0	2	1.5	1
	카드뮴 및 그 화합물	3.0	4.0	4.5	5.0	5.5	6.0	6.5	7.0	2	1.5	1
	수은 및 그 화합물	3.0	4.0	4.5	5.0	5.5	6.0	6.5	7.0	2	1.5	1
	유기인화합물	3.0	4.0	4.5	5.0	5.5	6.0	6.5	7.0	2	1.5	1
	비소 및 그 화합물	3.0	4.0	4.5	5.0	5.5	6.0	6.5	7.0	2	1.5	1
	납 및 그 화합물	3.0	4.0	4.5	5.0	5.5	6.0	6.5	7.0	2	1.5	1
	6가크롬화합물	3.0	4.0	4.5	5.0	5.5	6.0	6.5	7.0	2	1.5	1
	폴리염화비페닐	3.0	4.0	4.5	5.0	5.5	6.0	6.5	7.0	2	1.5	1
	트리클로로에틸렌	3.0	4.0	4.5	5.0	5.5	6.0	6.5	7.0	2	1.5	1
	테트라클로로에틸렌	3.0	4.0	4.5	5.0	5.5	6.0	6.5	7.0	2	1.5	1

※ 비고

1. 배출허용기준초과율 = (배출농도 - 배출허용기준농도) ÷ 배출허용기준농도 × 100
2. 희석하여 배출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의 산정 시 배출허용기준초과율의 적용은 희석수를 제외한 폐수의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한다.
3.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유출·누출계수는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400퍼센트 이상, 지역별 부과계수는 청정지역 및 가 지역을 적용한다.